

| | |
|--------------|------------------------|
| 의안번호 | 제 108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07년 월 일 (제 259 회) |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8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부합시키고자 일부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용어의 통일)
 - 상시대비체제 → 상시대비단계(안 제2조제5호가목)
 - 사전대비체제 → 사전대비단계(안 제2조제5호나목, 제4조제3항)
-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준용
 -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안 제9조제2항)
- 다.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조정
 - 기획관리실장 → 정책관리실장(안 제4조제2항제2호)
 - 국장(소방본부장 포함) → 실·국·본부장 소방본부장 포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과장 → 실·과·팀장(안 제4조제2항제4호, 제8조제2항)

라.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대책반 명칭 조정

- 경제통상반 → 경제투자반
- 기구의 신설·조정 → 균형발전반
- 문화관광반 → 문화관광환경반
- 건설교통반 → 건설재난관리반
- 복지환경반 → 복지여성반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를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가목중 “상시대비체제”를 “상시대비단계”로, 나목중 “사전대비체제”를 “사전대비단계”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제3호중 “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을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으로, 제4호중 “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 별표 1
2.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 기반재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3. 재난유형에 따른 사전대비단계에서는 실·국·본부대책반장을, 비상·대응단계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

제4조제4항중 “재난업무 담당 과장”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단서중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을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팀장”을 “지역안전팀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본 부 장 : 도 지 사

차 장 :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 정책관리실장

통제관 : 소관업무실·국·본부장

담당관 : 소관업무담당실·담당

실·국·본부 대책반

| 상황관리반 | 종합상황반 | 홍보반 | 자치행정반 | 경제투자반 | 균형발전반 | 농정반 | 건설재난관리반 | 복지여성반 | 문화관광환경반 | 구조구급반 |
|---|--|--|---|---|---|--|--|--|--|---|
| 정책기획관 | 상황실장 | 공보관 | 자치행정국장 | 경제투자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 농정본부장 | 건설재난본부장 | 복지여성국장 | 문화관광환경국장 | 소방본부장 |
| 1.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총괄 조정 2. 재해관련 긴급 예산 편성·지원 3. 상황근무자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4. 방재 통신·전산 시스템 가동 5. 기타 각실 분야에 관한 사항 6.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 1. 상황일지 작성 등 2. 피해상황 파악 3. 기상상황 등 예측 분석 관리·전파 4.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 정보 수집·분석 5. 긴급상황 관리 6. 재난 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7.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현장상황 관리관 지원팀 구성 운영 8.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 관한 사항 | 1. 재해상황 보도 2.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3. 보도자료 수집 배포 및 취재지원 4. 방송·언론 홍보 및 TV 모니터링 5. 언론 인터뷰 전담 6. 기타 대민 홍보와 관련 되는 사항 | 1. 재난복구 관련 인력 수요파악 및 동원총괄 2. 민심동향 파악 및 안정 대책 추진 3. 재난관련 제세 및 조달 물자 확보 지원 4. 공무원 동원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 행정분야에 관한 사항 | 1. 기업체·공업 단지 용급 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시 일반금융 지원 3. 재해복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제 통상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1. 도시개발, 지역개발분야 용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분야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신도시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4. 교통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피해에 관한 사항 | 1. 농정분야 용급조치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2. 농축산 시설 복구 장비·자재 확보 지원 3. 재난지역 농축산 관련 방역 실시 4. 기타 농정 분야 재난 대책에 관한 사항 | 1. 도로·하천 분야 용급 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 장비 동원 3. 공공시설 용급복구에 관한 사항 4. 수송로개설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 1. 복지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구호에 관한 사항 3.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용급구호에 관한 사항 4. 의료·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5.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6. 분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복지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 1. 문화·관광·체육분야 용급 조치 및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2. 재난시 문화재의 안전 보호 관리 3. 급수대책 관련 사항 4. 환경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쓰레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 관광·환경 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1. 화재예방·진압에 관한 사항 2. 재난지역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
|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예산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 재난관리팀 유관기관 파견자 (별도 인원) | 공보관실 |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 경제정책팀 투자유치팀 전략산업팀 통상외교팀 기업지원팀 자원관리팀 | 균형정책팀 지역개발팀 신도시건설팀 교통물류팀 건축팀 | 농업정책팀 농산지원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산림녹지팀 | 건설정책팀 하천관리팀 지역안전팀 토지정보팀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경노개발과 청소년아동과 보건위생과 |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
| 사전대비단계: 3명 비상단계: 6명 |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1명 비상단계: 1명 | 사전대비단계: 1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2명 비상단계: 6명 |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4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3명 비상단계: 4명 | 사전대비단계: 2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5명 비상단계: 5명 | 사전대비단계: 1명 비상단계: 2명 |

<근무방법>

1. 실·국·본부 주무 실·과·팀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30명, 비상단계 49명)
3. 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본부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별표 2]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 업 무 내 용 | | 본부장 | 전 결 권 자 | | | |
|--|-------------------------------------|-----|---------|------------|-----|-----|
| | | | 차 장 | 총 괄 조정관 | 통제관 | 담당관 |
| 본부조직 및 운영 |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 | | | ○ |
|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 | | | ○ |
|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 | | | ○ |
|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대 지도점검 | | | | | ○ |
| | 재해일지 기록배치 | | | | | ○ |
|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 | | | ○ |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 | | | ○ | |
|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 | | | ○ |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 | | | | ○ |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 홍수 등 경보 발령시 | | | | | ○ |
| | 홍수주의보 발령시 | | | | | ○ |
| | 기상주의보 발령시 | | | | | ○ |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 | | | | ○ |
| 수난구조 사 항 |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 수난구조 상황파악 | | | | | ○ |
| 군 지 원 사 항 |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 | | | ○ |
| 구호활동 사 항 |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 | | | ○ |
| 통 신 망 운 영 에 관 한 사 항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 | | | ○ |
|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 | | | ○ |
| 피해종합 대 | 기상자료 수집 | | | | | ○ |
| | 피해상황 자료수집 | | | | | ○ |
|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 | | | ○ |
|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 | | ○ | |
|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 제관 전결) | | ○ | | | |
|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 제관 전결) | ○ | | | | |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 | | | | ○ |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 치되는 사항 | | | | | | ○ |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 | | | ○ |

[별표 3]

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제6조 관련)

| 업 무 내 용 | | 본부장 결 재 | 전 결 권 자 | | | |
|---------------------------------|------------------------|------------|---------|-----------|-----|-----|
| | | | 차장 | 총괄 조정관 | 통제관 | 담당관 |
| 충청북도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 | | | ○ |
|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 | | | ○ |
|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 | | | ○ |
|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 | | | ○ |
|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 | | | ○ |
|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 | | ○ | |
| 충청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 | | | ○ |
|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 | ○ | | |
| | 회의소집 방침결정 | | ○ | | | |
|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 | | | ○ |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 | | | ○ | |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 | | | ○ | |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 | | | | ○ |
| 상황단계별 조 치 |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 | ○ | | |
| 상 황 관 리 | 재난상황 수집전파 | | | | | ○ |
|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 | | | ○ |
| 군 지 원 사 항 |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 | | ○ | |
|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 | | | ○ |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 | ○ | | | |
| 공 권 력 투 입 지 원 사 |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 | | | ○ |
| 통 합 지 원 중 합 대 책 | 지원상황 자료수집 | | | | | ○ |
|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 | | | ○ |
|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 | ○ | | |
|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 | | | ○ |
|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 | | | ○ |
|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 | | ○ | |
|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 의) (생략)</p> <p>1. ~ 4. (생략)</p> <p>5. (생략)</p> <p>가. <u>상시대비체제</u>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p> <p>나. <u>사전대비체제</u>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p>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생략)</p> <p>②(생략)</p> <p>1. (생략)</p> <p>2. 총괄조정관 : <u>기획관리실장</u>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함.</p> <p>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국장(소방본부장 포함)</u>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p> <p>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과장</u>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을 보좌한다.</p> <p>③(생략)</p> <p>1. <u>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1</u></p> <p>2. <u>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2</u></p> | <p>제2조(정 의)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u>상시대비단계</u> : ----- ----- -----</p> <p>나. <u>사전대비단계</u> : ----- ----- -----</p>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정책관리실장</u>----- -----</p> <p>3.----- -----</p> <p><u>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u>----- -----</p> <p>4. ----- ----- <u>실·과·팀장</u>----- -----</p> <p>③(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 <u>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 별표 1</u></p> |

| 현행 | 개정안 |
|--|--|
| <p>3.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 기반재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p> <p>4. 재난유형에 따른 <u>사전대비체제</u>에서는 <u>실국대책반장</u>을, 비상·대응단계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p> <p>④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재난업무 담당 과장</u>이 되며,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기반보호총괄관</u>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p> <p>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u>별표 3</u>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u>별표 4</u>와 같다.</p>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u>과장</u>,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p> <p>①(생략)</p> <p>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p> | <p>2. (중전의 3호와 같음)</p> <p>3. ----- <u>사전대비단계</u> ----- ----- <u>실·국·본부대책반장</u> ----- ----- -----</p> <p>④----- ----- ----- <u>재난관리팀장</u>----- ----- ----- -----</p> <p>제6조(위임전결) ①----- ----- ----- <u>별표 2</u> ----- ----- <u>별표 3</u> ----- -----</p>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 <u>실</u> ----- ----- <u>· 과· 팀장,</u> ----- ----- ----- -----</p> <p>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p> |

| 현행 | 개정안 |
|--|--|
| <p>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u>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p> | <p>-----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p> |
| <p>③ ~ ④(생략)</p> | <p>③ ~ ④(현행과 같음)</p> |
| <p>[별표 1] - <u>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u></p> | <p><삭 제></p> |
| <p>[별표 2] - <u>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u></p> | <p>[별표 1] - <u>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u></p> |
| <p>[별표 3] -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p> | <p>[별표 2] (종전의 별표 3과 같음)</p> |
| <p>[별표 4] - 기반체제보호 전결 사항</p> | <p>[별표 3] (종전의 별표 4와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시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정책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정책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둔다.

제8조(경제투자본부에 두는 팀) ①경제투자본부에 경제정책팀, 투자유치팀, 전략산업팀, 통상외교팀, 기업지원팀, 자원관리팀을 둔다.

제9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팀) ①균형발전본부에 균형정책팀, 지역개발팀, 신도실건설팀, 교통물류팀, 건축팀을 둔다.

제10조(농정본부에 두는 팀) ①농정본부에 농업정책팀, 농산지원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산림녹지팀을 둔다.

제11조(건설재난관리본부에 두는 팀) ①건설재난관리본부에 건설정책팀, 하천관리팀, 재난관리팀, 지역안전팀, 토지정보팀을 둔다.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경노재활과, 청소년아동과, 보건위생과를 둔다.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에 두는 과) ①문화관광환경국에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환경과, 수질관리과를 둔다.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